**GEOfood 제품 및 생산자를 위한 규정 :**

1. 승인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의 생산자 또는 기업만이 GEO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GEOfood 브랜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질공원에서 Magma지질공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각 지질공원에는 로고 사용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4. 기업 또는 경작지(농장)의 위치와 관련하여, 각 지질공원에서는 지질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완충지대를 설정했다면 지질학적 정보와 함께 라벨에 완충지대에 대해 표기하십시오. 완충지대는 제품이나 이를 생산하는 공장이 지질공원 경계 인근에 위치하거나 지질학적 현상의 일관성이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6. 생산자는 지질공원 내 또는 완충지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GEOfood 생산자는 지질공원 또는 완충지대 이외의 지역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7. GEOfood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는 지질공원 또는 완충지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8. 원재료가 지질공원 또는 완충지대 외에서 가공되는 것은 허용합니다.

**라벨 정보 :**

GEOfood 제품은 해당 지질공원의 지질유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관련성에 대한 정보는 식품 또는 식당에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시 : 마지막 빙하기 때 빙하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비옥한 사암에서 자란 감자와 야채, 쥬라기 때 고대 테티스해에 퇴적된 이회암에서 자란 올리브로 만든 올리브유, 고대 바다의 소금, 특별한 지질현상으로 만들어진 지질공원 토양에서 키운 곡물로 만든 빵 등)

만약 해당 지질공원에서 완충지대를 설정했다면, 이 또한 반드시 라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와 지질유산과의 관련성은 라벨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GEOfood 생산자와 주요 카테고리 :**

제조 과정에 따른 GEOfood 제품은 2종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원재료 : 야채, 견과류, 육류, 장과류, 생선, 버섯, 올리브유, 꿀, 우유 등
2. 가공제품 : 지질공원 또는 완충지대에서 자란 원재료를 가공한 식품, 음료

(하단 “지리적 기준” 참조)

 “지리적 기준”

 \* 생선은 냉동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지질공원 또는 완충지대가 원산지여야 합니다.

 \* 식품에 첨가하는 설탕이나 소금은 지질공원이 원산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오푸드 식당 메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GEOfood 식당 규정 :**

1. GEOfood 로고는 식당과 홍보물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2. GEOfood 메뉴는 지질공원에서 지역주민 협력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고객이 미각을 통해 지질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질유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식사 공간에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기업은 지역 원재료를 최소 50% 이상 사용한 GEOfood 메뉴를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합니다.

4. GEOfood 식당은 계절별 또는 연간 기준으로 최소 1개의 GEOfood 메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지질공원과 식당은 로고 사용, 리플릿,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상호 홍보를 해야 합니다.

6. 식당은 매년 또는 합의에 따라 지질공원에 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로고 사용 규정**

\* GEOfood 로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질공원 로고와 병용 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지질공원의 개념과 연관된다면, 기타 지역 로고와 병용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상품에서 유네스코 로고와의 병용 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